

## 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하여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,

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,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·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,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,

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: 2026. 7. 31. ~ 2026. 9. 9..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##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「건축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역  
별표 1 제1호 본문 중 “및 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)”를  
“· 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)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
(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정형  
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 본문 중 “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
아파트형 주택”을 “·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  
트형 주택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4호가목 중 “로서”를 “, 일반형 대안교육기관(「대안교육기관  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을  
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”로 한다.

별표 1 제10호가목 중 “대학교, 그 밖에”를 “대학교, 일반형 대안교육기  
관, 그 밖에”로 한다.

별표 1 제23호의2의 본문을 가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  
이 신설한다.

나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에 따라 국가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 
필요한 시설

별표 1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안교육기관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1호, 같은 표 제2호, 같은 표 제4호카목, 같은 표 제10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

허가·인가·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제3조(국가안보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23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제4조(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) ① 이 영 시행 전에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별표 1 제1호, 제2호, 제4호카목, 제10호가목 및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

부속용도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5조(특별건축구역의 지정)<br>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<br>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br>구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<br>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<br>다.<br>1. ~ 13. (생    략)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| 제105조(특별건축구역의 지정)<br>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<br>1. ~ 13. (현행과 같음)<br>14. 「건축기본법」 제22조에<br><u>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</u><br><u>역</u> |
| ② ~ ③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3757 |